현 행	개 정 안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1. ……건설교통부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건설교통부령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수수료는 허가시에 징수하되 도로점용료 수입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한다.) 수입중지로 징수한다.	③ …… 수입으로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공사와 관련된 일시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시 또는 구 관할구역내의 국도중 고속도로를 제외한 국도를 포함한다)은 동장에게 위임한다.	(삭 제)

94 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의안 번호	20

제 안 일 자 95. 9. 2.
제안자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동의 관내도 제작설치에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조사기간은 95.9.2부터 95.9.23까지 22일간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마포구청과 해당 제작업자로 한다.
－조사반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한다.
－조사장소는 마포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로 한다.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

조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서울특별시 마포구 각동의 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조 사 기 간

1995.9.2.(토) ————1995.9.23.(토) [22일간]

조사실시대상기관

－마포구청(총무과, 동사무소), 해당 제작업체

조사위원회 편성 및 조사장소

구 분	조 사 위 원	대 상 기 관	조 사 장 소	사무직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간사 이인구 위 원 김효철, 박영길,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마포구청(총무과, 동사무소 해당제작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실	박 관 수 전문위원 이 준 범

조사할 사안의 범위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사항

조 사 일 정

구 분	일 정	내 용	비 고
준비단계	'95.9.2. | | | 9.6. |	* 조사관계 자료 수합 * 조사계획서 수립, 채택(위원회) *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서 채택, 이송 *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서 채택, 이송 * 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 * 조사계획 통보 * 조사자료 검토, 문제점 파악	
실시단계	'95.9.12. | | | '95.9.19.	* 조사의 건 상정 *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조사할 사안에 대한 보고 * 조사 실시 | * 조사 종결	
조처사리결단과계	'95.9.20. '95.9.23. 34회 임시회 |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위원회) * 조사결과 보고(본회의) *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조 사 요 령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제작설치한 '94년도 동관내도에 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증인) 증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

소 요 예 산

○ 조사실시에 따른 위원회간담회비
7인×20,000원×7일＝980,000원

○ 국내여비
7인×17,000원×3일＝357,000원

행 정 사 안

가. 위원장은 조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는다.

나. 위원장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한다.

.....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서

마포구청장 귀하

우리구의회가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95.9.12.—9.19.(8일간)
2. 출석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4층)
3. 출석대상 : 94동관내도 설치 및 제작관련 전·현직 공무원
   - 구 청 : 총무국장, 총무과장, 동정계장, 담당직원
   - 동사무소 : 동장, 시민생활계장, 담당직원
4. 출석요구사유 :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995. .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

마포구청장 귀하

우리구의회가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서류를 제출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제출 및 보고사항 :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방침서, 계약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
2. 서류제출 및 보고일시 : '95.9.11. 12 : 00
3. 보고장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1995. . .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심사보고서

'95. 9. 4.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인 주소 : 마포구 상암동 34-78

성명 : 정만대외 71인

나. 소개의원 : 권오범의원

다. 접수일자 : '95.8.2.

라. 회부일자 : '95.8.2.

마. 상정일자 : 제32회의회(임시회) 제1차위원회(95.8.7)상정, 질의토론, 보류 제33회의회(임시회) 제6차위원회(95.9.4.) 상정, 질의토론, 의결

2. 청원요지

본 청원은 상암동 산4번지 및 28번지 일대의 시유지상 무허가건물 거주 주민들에 대하여 '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시 주관부서에서 공사에 저촉되는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 시유지를 사업당시 시가로 불하 건축허가 및 주택개량자금 융자도 가능하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그 당시 약속과는 달리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현시가로 하고 불하대금도 5년 분할납부로 해야 한다는 주관부서의 답변에 해당 주민들은 사업시행 당시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청원임.

3. 취지설명의 요지(소개의원 : 權五範議員)

상암동 산4번지 및 28번지 일대는 '89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었고, '91년 동사업 제2지구로 고시되어 폭 25m 도로공사 및 폭 8m 소방도로가 완료된 상황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당초 시작될 당시 주관부서에서는 동사업이 확정된 시점의 시가로 즉시 불하계약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개량자금 융자도 가능하다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약속과는 달리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현시가로 하고 대금도 5년분할로 한다는 답변은 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행정의 불신임을 초래한 바, 당초 주민과의 약속을 순리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요망함.

4.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본청원은 인근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조건과 지역개발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이었으나, 지난 89년4월1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90